

가축분뇨 액비 추비 이용(업채류) 확대 관련 연구용역 입찰 재공고 <긴급>

1. 입찰에 부치는 사항

가. 입찰건명 : 가축분뇨 액비 추비 이용(업채류)확대 관련 연구용역
(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)

나. 용역 계약 기간 : 23년 7월 ~ 12월 말 (총 6개월)

다. 용역 계약 금액 : 30,000천원

※ 세부 규정의 경우 한돈자조금 규정에 준용

라. 용역 범위 :

- 가축분뇨 액비 추비이용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및 모델 마련
- 여과액비 활용 사업의 환경·경제적 효과 평가

2. 참가자격

□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유자격자

○ 위와 관련된 유사 연구를 추진한 실적이 있는 대학 및 기관, 단체, 연구소

3. 입찰일정

○ 입찰공고 기간 : 2024년 7월 1일 ~ 7월 9일 (한돈협회 및 나라장터 공고)

※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(약칭:국가계약법시행령) 제35조(입찰공고의시기)5항, 제43조(협상에의한계약체결) 1항 준용

○ 입찰등록 및 제안서 마감 : 2024. 7. 9(화), 17시 까지

- 접수처 :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6길9 제2축산회관 3층 (사)대한한돈협회
(E - mail 접수처 : rlagkwp@naver.com)

- 접수방법 : 직접 방문 또는 우편 및 이메일 접수

○ 심사위원회 계획(안) : 2024. 7. 10(수), 14:00

- 장소 :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6길 9 제2축산회관 3층 (사)대한한돈협회

○ 협상 및 계약체결 : 2024. 7. 12(수)

○ 유찰 : 유찰시 적격심사로 협상 대상 선정

※ 세부 일정 및 장소, 방법 등은 상황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.

4. 제출서류

- 사업 제안서 1부
-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
-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
- 사업비 집행 계획 1부.
-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- 위임장(해당자에 한함) 1부
- 관련 사업 실적 증빙서

5. 낙찰자 선정 : 경쟁입찰(협상에 의한 계약체결)

-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35조 5항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절차를 통하여 선정
- 평가 기준 및 배점은 심사기준표(별첨)를 참고하고, 제안요청서 및 과업 지시서를 정확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시
-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개발표평가 한 후 종합평가를 토대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, 개별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 선정
- 심사위원회는 대한한돈협회의 내부 및 외부의 전문가로 구성할 예정이며 위원명단은 비공개
- 협상은 제안서 기술 능력평가(80%) + 가격평가(20%)를 종합 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함
(단, 기술능력평가 결과 배점한도의 85% 미만인 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함)
-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 순위자로 하고,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 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순위자로 함
※ (세부평가항목 배점 우선순위) 기술능력평가/정성적 평가분야의 ①(15)-②(15)-③(15)-④(15)순
- 평가결과 및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

6. 연구용역비 한도

- 연구용역비 한도는 30,000천원(제세공과금 포함)으로 하되, 제안자가 제안 하는 내용에 따라 사업비를 감액하여 제시할 수 있으며, 제안내용과 사업비 등을 복합적으로 심사하여 계약 우선순위업체 선정
- 연구용역의 특성상 연구용역의 간접비는 총 사업비의 6%를 초과할 수 없음.

7. 입찰무효

-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함

8. 기타사항

- 계획서 및 제안서 양식(첨부자료 참고하여 계획서 및 제안서 작성·제출)
-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.
- 한돈자조금 사업승인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최종 선발한 용역제안서는 계약 체결 및 사업 추진과정에서 본회와 협의하여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문의처 : (사)대한한돈협회 농가지원부 김하제 과장(T. 02-581-9754)

위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7월 1일

사 단 법 인 대 한 한 돈 협 회 장



<별첨>

가축분뇨 액비 추비 이용(업채류) 확대 관련 연구용역 선정 심사 기준표

□ 심사기준표

구 분	평가 항목	배 점	채 점		
기술 능력 평가	정량적 평가분야 (20)	① 사업 수행경험(실적) -본 연구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충족 하는가?	10		
		② 사업 수행 인력 전문성 (자격증, 경력) -인력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?	10		
	정성적 평가분야 (60)	① 용역사업의 이해도 -제안의 내용 및 사업목적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가?	15		
		② 사업계획의 구체성 -목적, 사업내용, 추진절차 등이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?	15		
		③ 사업계획의 타당성 -목적 및 사업내용을 이해하기 타당하고 적합한 사업 추진방법, 절차, 일정이 타당한가?	15		
		④ 사업계획의 체계성 -목적 및 사업내용을 달성하기 위해 전반적 추진계획이 체계적인가?	15		
	가격 평가	입찰가격 평가 (20)	① 사업 예산의 적정 배분 -사업 소요 예산이 적절히 배분되었는가?	20	
		총점		100	

※ 기술능력평가 결과 배점한도의 85% 미만인 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함.

	성 명	서 명
심사 위원		

가축분뇨 액비 추비 이용(엽채류) 확대 관련 연구용역 입찰 과업지시서

1. 사업목적

- 21년도 감사원 감사 모범사례로 철원군에서 15년도부터 액비를 시설 재배지(하우스 등)에 이용한 사례를 선정하였고 농림부 및 관계기관등은 이와 관련된 제도 개선을 추진함.
- 그러나 추비이용 작물은 일부 작물에 국한되어 있으며 가축분뇨 액비의 추비이용 확대를 위해 경기도 포천시와 경축 순환농업 실증연구사업 추진

2. 사업 추진 절차 및 방안

- 1) 포천시 협조등을 통하여 사업대상 및 공급체계 마련
 - 액비공급을 받는 경종농가 및 액비공급 주체인 한돈농가 섭외를 통하여 가축분 추비액비 공급체계 마련
 - 추비액비 공급을 위한 각 사업 주체별 역할 부여
 - 정기적 공급을 위한 지원체계 및 제도 마련
- 2) 여과액비 활용 사업의 환경·경제적 효과 평가
 - 축산업계: 농장 및 공동자원화 시설의 운영개선 효과
 - 경종업계: 생산비 절감 및 저탄소 농산물 인증 취득 효과
 - 중앙/지방정부: 탄소중립, 양분수지 개선, 경제효과
- 3) 추비 액비이용 확대를 제도개선 및 확대방안 마련
 - 여과액비 활용사업을 지원하는 지자체 법령의 제·개정 방안
 - 추비 액비 이용 확대를 위한 표준모델 제시
 - 추비 액비 이용 확대를 제도개선 사항 발굴

3. 향후 이용 방안

- 한돈농가 가축분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 마련 등 사례확대 추진